

김해시 ·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서

김해시(주관 : 김해시서부보건소, 이하 “서부보건소”라 함)와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하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은 상호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김해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보건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부보건소”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이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의료협력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서부보건소와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을 위해 다음의 업무들을 추진하고,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세부 내용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1. 돌봄필요대상자 발굴
2. 대상자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3. 관리의사 진료 처방 및 돌봄대상자 방문간호 및 방문 물리치료
4.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수행
5. 통합케어플래너, 건강증진 예방교육 및 상담
6. 통합방문간호센터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교환
7. 기타 상호 협의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협약 변경 의사 또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협약 만료일에 종전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기간은 갱신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협약의 해지]

-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법적구속력 배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제5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 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4월 19일



관장 황성철

황성철



시장 홍태용

홍태용